

## 不正競争行爲에 관한 考察 (7)

### IV.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규제책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 제2조 제1호에서 열거된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영업자에 대하여 민사적 규제로서 금지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4), 손해배상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5) 및 신용회복조치청구권(부정경쟁방지법 §6)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시정권고(부정경쟁방지법 §8)라는 행위 규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8조(罰則)와 제19조(兩罰規定)에서는 형사적 규제를 하고 있다.

#### 1. 민사적 규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행위에 의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는 그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4),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영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부정경쟁방지법 §5)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혹은 손해배상과 더불어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데 필



윤선희 · 상지대학 법학과 교수

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6). 즉 법은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에 의한 직접적인 금지청구권을 기본으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 조치를 사후적으로 인정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소송절차상 금

지청구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계속되는 침해의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인정된다. 즉 본법이 정하고 있는 민사적 규제 수단을 행사하기에 앞서 또는 그와 함께 부정경쟁행위의 금지가처분신청이 인정된다 하겠다<sup>104)</sup>.

#### 1) 금지청구권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부정경쟁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며 유효한 수단이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은 제4조 제1항에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그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104) 同旨 황의창, 전계서, 60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은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에게 금지를 구하는 협의의 금지청구권 및 그의 예방청구권뿐만 아니라 금지 및 예방을 실효있게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위법상태의 제거 내지 위법행위조성물의 폐기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 청구권은 이미 발생한 이익침해에 대하여 그 보전을 목적으로 한 사후적 구제수단인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달리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침해행위의 정지나 장애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에 대한 예방을 사전적 구제수단의 성격이 강한 보호수단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의 피해자에게 법이 특별히 부여하는 방어권이라 할 수 있는 바 금지의 범위는 당해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 등을 함에 있어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 내에 그쳐야 한다. 특히 쌍방 당사자의 이익이 신중하게 비교衡量되어 그 조치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금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① 금지명령이 없을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② 금지청구인의 피해가 피청구인이 입는 손실보다 큰 것 ③ 금지명령이 공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 등의 설명을 하고 금지의 기간 역시 ① 새로 선택한 표지가 주지표지로 인식될 수 있는 기간 ② 그 표지의 제작 중단에 따른 회사정리에 필요한 기간 ③ 유통되고 있는 표지의 수거 및 폐기와 상품에 부착된 표지의 제거 등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금지기간의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sup>105)</sup>도 있다.

#### ① 청구권자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가 행사할 수 있다.

‘영업’이란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에서의 영업개념과의 마찬가지로 상법상의 상행위뿐만 아니라 널리 經濟的 對價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기업이나 주식회사의 사업활동 뿐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특수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이나 각종 비영리단체의 경영활동을 포함하게 된다.

‘영업상의 이익’은 침해의 대상이 되는 이익으로 收支計算上의 이익 또는 會計上의 이익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영업상의 이익을 부정경쟁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어 그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이 전전한 거래질서 유지의 이념에서 시인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피고가 경영하는 ‘수원 보령약국’이 약사법상 약국을 개설, 경영할 수 없는 제약회사인 원고가 경영하는 ‘보령약국’과 혼동되어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것은 약사법에서 금지된 영업행위에 관련한 이익의 보호를 구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sup>106)</sup>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자가 영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단지 관계 법령이 요구하는 형식이나 절차를 지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받을 가치가 부인되지는 않는다.

영업상의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우려가 있다면 금지청구권은 인정된다.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로서는 출처혼동에 의한 거래처의 상실·매상의 감소·신용의 훼손·標識의

105) 황의창, 전거서, 61면.

106) 大判 1976. 2. 24. 73 다 1238.

標識力의 稀薄化 내지 고객흡인력의 감소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판례<sup>107)</sup>도 신용의 失墜, 상표 및 용기의 顧客吸引力의 稀釋化를 영업상의 이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나아가 오인에 의한 수요자의 불평, 우편물의 착오배달, 입사지원자의 곤혹, 영업방침에 대한 誤解의 발생 등과 같은 영업활동상의 지장을 포함한다는 견해<sup>108)</sup>도 있다. 우려란 주관적 견해나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관념상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객관적 인식될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이익침해의 우려'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여 부정경쟁행위가 존재함에도 그 요건이 흠결하고 있다는 이유로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본법의 입법취지에 벗어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혼동의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민사적 구제로서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영업자이다. 따라서, 스위스나 독일의 법제나 소비자 단체 내지 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우리의 법제에서는 직접적으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영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등에게는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도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당사국안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16).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및 영업주체혼동야기행위에 있어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고 인정하는 자란 標識에 대하여 固有하고 正當한 영업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금지청구를 구하는 자는 표지의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매매계약·라이선스 계약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당해 표지를 보유하게 된 자이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대상은 주지 표지 자체이므로 표지가 사용권자나 영업양수인의 상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지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원산지허위표시행위 및 출소지등혼동야기행위에 있어서도 원산지표시나 출소지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자가 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원산지등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자 또는 그 수입판매업자등 허위표시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를 全稱으로 한다. 質量誤認惹起行爲에 있어서는 널리 競爭事業者라면 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은 영업상의 이익침해의 예방 또는 배제를 위한 권한이며 따라서 영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영업양도에 의하여 영업을 이전과 더불어 주지된 표지가 이전되었다면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이 갖는 금지청구권을 승계한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없이 금지청구권만의 이전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의무자

금지청구의 상대방은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이다.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는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 금지 청구가 중심적 지위에 놓이게 되는 반면, '부정경쟁행위를 하고자'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장래 침해

107) 大判 1980. 12. 9. 80 다 829.

108) 小野昌延, 今村成和 외 3인 編 註解經濟法(下卷), 靑林書院, 829면 참조.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예방청구가 중심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다만 여기에서의 '행위'는 실행의 착수에 국한하지 않고 금지청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실행의 착수를 기다릴 필요없이 착수의 우려가 인정되는 단계에 이르면 행위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본다는 견해<sup>109)</sup>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굳이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와 '하고자'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부정경쟁행위이기에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데, 금지청구가 인정되므로 부정경쟁행위의 행위요건이 인정된다는 순환논리적 모순이 있다.

이 때의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뿐만 아니라 부정경쟁행위를 하도록 하는 자, 즉 교사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거나 사용자인 법인이나 개인의 피용자가 사용자의 지시, 묵인 또는 관여하에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용자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표자 개인이나 사용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sup>110)</sup>, 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비추어 부정경쟁행위를 한 법인의 대표자·피용자도 금지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할 것이다.

### ③ 금지청구의 내용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현실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금지를 청구하고 장래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금지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표 제작 행위에 대한 '제작활동의 금지, 송전의 단전, 급수의 단수, 원재료 공급의 차단' 등을 들 수 있고, 상품표지가 부착된 상품등 매매행위에 대한 '당해 상품의 유통정지, 상점의 폐쇄' 등의 처분을 들 수 있겠다.

금지청구권 등은 장래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협의의 금지청구권이나 예방청구권은 문제가 된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거나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을 전제로 하며, 전체 상황에 비추어 명백하게 반복의 위험이 없다면 금지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협의의 금지청구권은 부정경쟁행위가 가까운 과거에 있었거나 현존하는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 부정경쟁행위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반복의 위험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권자는 부정경쟁행위가 있음을 입증하면 되고 피고는 그 추정을 깨뜨리는 반증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예방청구권은 금지청구권의 특별한 형태로서 아직까지 부정경쟁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나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행하여질 직접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인정된다. 다만 협의의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가 있다는 사실의 입증만으로 반복의 위험이 추정되는데 비하여, 예방청구권자는 부정경쟁행위가 장래에 행하여질 가능성의 존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또는 상황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금지 및 예방청구에 부수하여 부정경쟁행위를

109) 황의창, 앞의 부분.

110) 손주찬, 전제서, 470면.

조성한 물건의 폐기, 부정경쟁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부정경쟁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4Ⅱ). 이는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이 신설한 것으로 부정경쟁행위로 야기된 물적 상태의 제거를 통하여 장래의 침해 재발을 막아 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附帶性格의 청구권이다. 따라서 본 청구권은 단독으로 독립해서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금지 또는 예방청구에 수반해서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1항상의 금지청구와는 달리 作爲請求權이다.

이러한 폐기나 제거 등의 조치는 그 附帶請求權의 성격에 비추어 장래의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내에서 인정된다. 상품주체 또는 영업주체 혼동야기행위의 경우에는 위법한 표지를 부착한 간판·포장·상품 등의 폐기를 명하거나 위법표지 자체의 말소로서 看板·標札·包裝紙·作業服·帳簿 등의 문자의 말소 등이 인정될 수 있다.

등기는 그대로 둔채 사용만을 금지시킨다는 것은 금지청구권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쓸데 없는 혼란만을 가져오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실효 있게 하기 위하여는 등기상호의 말소청구권등도 본항의 청구권에 포함된다. 질량오인야기행위에 있어서는 오인을 일으킨 광고표시의 訂正, 欺瞞的인 광고물의 폐기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광고물의 폐기는 광고물의 거래권에서의 수거등 보다 경한 수단이 권리보호에 충분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기타 필요한 조치로서 판결주문의 광고나 거래처에 대한 통지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부정경쟁방지법 §5).

손해배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者는 침해자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외에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도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지청구권과 달리 부정경쟁행위의 고의·과실,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영업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부정경쟁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관관계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요구된다. 이는 그 규정을 삭제하고 있던 1986년 부정경쟁방지법하에서도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풀이되던 부정경쟁행위자의 주관적 구성요건이다<sup>111)</sup>. 다만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정하고 있지 않던 제1차 개정법을 부정경쟁방지법이 불법행위법에서 경쟁법으로의 이행으로 이해하고, 다시 주관적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태도를 비판하는 견해<sup>112)</sup>도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정경쟁행위와 상당한 因果關係에 있는 모든 손해로서 적극적 손해(매상감소, 침해조사비용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그리고 신용훼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적극적 손해란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익이 손실되는 경우로 이른바 발생손해를 말한다. 소극적 손해란 부정경쟁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을

111) 주관적 요건을 명정하고 있지 않은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제 1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일반원칙에 따라 이와 같은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고 본다.  
112) 정호열, 전게서, 236-237면 참조

수 있었던 권리의 손실, 즉 逸失利益을 의미한다.

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상표법 §68) 침해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으며(입증책임의 전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상표법 §67 I). 즉 상표권은 공보에 의한 공고 및 등록제도등으로 인해 일반인에게 널리 공지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도 손해액의 증명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sup>113)</sup>. 그러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위와 같이 일률적인 고의 내지 과실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손해배상액의 관한 추정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아<sup>114)</sup>, 특허 逸失利益에 관하여 그 산정이 특히 곤란하다. 이에 결국은 법원의 판례를 통한 일정 기준의 확립을 기대하며, 다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때의 산정방법을 이용 참고하고자 한다<sup>115)</sup>.

먼저 模造品總價格說은 침해자가 판매한 침해물(모조물)의 추가격을 소극적 손해라고 보는 방법<sup>116)</sup>이고, 模造品總販賣利益說은 모조품 각개

에 관하여 침해자가 얻은 이익과 시장에서 판매된 총수량을 곱하여 그 총액을 소극적 손해로 보는 방법<sup>117)</sup>이다. 利益比較說은 특허권자가 침해행위 이전에 얻었던 이익과 침해행위후에 얻은 이익을 비교해서 그 차액, 즉 대상이익의 감소액을 소극적 손해로 보는 방법이고, 實施料說은 권리의 사용에 해당하는 實施料額을 소극적 손해로 보는 방법<sup>118)</sup>이다.

그리고 위 견해들에 대해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발생과 상실이유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득은 시장수요의 증감, 침해자의 상업적 재능 또는 막대한 선전비의 투자 여부 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는 것이므로 대상고 감소가 반드시 특허침해로 인한 것이었다거나 침해자가 얻은 이득이 특허권자 등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곤란한 면이 없지 않다. 같은 이유에서 상표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은 상표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는 상표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는 견해<sup>119)</sup>도 부당하다. 통설은 특히 다른 손해액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實施料說을 소극적 손해의 최소한으로 인정하여 한다고 한다<sup>120)</sup>.

손해배상의 효과 및 그 행사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일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113) 상표법 이외에도 특허법(§130, §128), 실용신안법(§31), 의장법(§65, §64) 등에서도 과실의 추정 및 손해액의 추정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114) 東京地判 1973. 3. 9. 판결에서는 '타인의 부정경쟁에 의하여 입은 손해의 산정에 대해서는 침해자의 부정경쟁행위에 의해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특히 背理인 것 같은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택가능한 방법이다. 그 경우 침해자의 이익이 침해행위와 무관한 것, 기타 특단의 사정에 대한 반증은 침해자가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특허법, 상표법 등의 손해액 추정규정을 부정경쟁방지법에 적용하고 있다.  
115) 小野昌延, 前掲書, 321면 이하 참조  
116) 東京地判 1952. 9. 30.  
117) 大阪地判. 1876. 4. 30.  
118) 大阪地判. 1980. 7. 15. 판결.  
119) 손주찬, 전거서, 472면.  
120) 송영식 외, 전거서, 283면.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성을 가지며, 금지청구권에서와 같은 특별규정도 없는 바 시효기간은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3) 신용회복조치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6).

신용회복조치도 광의의 손해배상에 포함되는데 부정경쟁방지법상에는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손해배상'은 金錢賠償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비록 금전배상을 하여도 훼손된 명예나 신용이 회복되기는 어렵다. 이에

법은 명예 또는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특히 원상회복적인 구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sup>21)</sup>.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예로는 사과문을 신문등에 게재하는 사죄광고를 들고 있으며, 이는 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하여 사죄광고의 게재를 명하는 판결을 대체집행등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64조와 관련하여 동조에 규정된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sup>22)</sup>.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신용회복조치로서 사죄광고를 명하는 판결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민사사건의 손해배상판결문이나 형사사건의 유죄판결문을 침해자의 비용으로 신문등에 게재하는 정도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이 조치는 신용회복에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한 범위에서 하여야 하므로 피해자의 상품이나 영업의 과대한 선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그 필요 범위를 넘는 것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sup>23)</sup>. <계속>

발특9705

'97전국우수발명품전시회 출품자 모집안내

- 개최목적 : • 최신 기술정보의 상호교류 및 발명품의 유통활성화
- 전국민의 발명사상 앙양과 우수발명인의 사기진작
- 우수발명의 지속적 창안 및 기술개발 촉진으로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
- 전시기간 : '97. 11. 27 (목) ~ 12. 2 (화) (6일간)
- 전시장소 : 한국종합전시장(KOEX) 본관 제1전시실
- 시상계획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WIPO상등 70여점 시상예정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97. 7. 1 (화) ~ 7. 31 (목)
  - 접수 및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발명진흥부 [557-1077/8 (235)]

121) 상표법 제 69조·특허법 제 131조·실용신안법 제 31조·의장법 제 66조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법 제 764조에서도 명예회복에 관하여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122) 憲法裁判所 1991. 4. 1. 89 헌마 160.

123) 손주찬, 전게서, 474면.